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특례 신설 등 〉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308호)

2025.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특례 신설	3
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달희 · 강선영 · 고동진 · 김상욱 · 이인선 · 김예지
김장겸 · 서범수 · 유용원 · 김상훈 · 조은희 · 김소희
의원(12인)

나. 발 의 일 : 2024. 11. 6.

다. 회 부 일 : 2024.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특례 신설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현행법 제16조제1항 각 호 본문에 따른 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제외)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특례) ① 입소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제16조제1항 각 호 본문에 따른 보호시설(제12조제3항제2호의 장애인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

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¹⁾

보호시설은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수사·법률·보호·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함.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기능 >

구 분		주요 기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 미만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취학·진학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등 지원 - 장애인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등 지원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현행법 제16조는 보호시설의 종류별로 입소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현행법 제16조제2항, 현행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현행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입소 중 연장기간 도과 후에도 입소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²⁾.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2. 피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1.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당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미성년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로 하되, 피해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유형 및 입소 기간 >

보호시설 유형 (제12조)		입소 기간(제16조 및 시행규칙)		
종류(개소수)	입소대상	원칙(A)	연장(B)	연장 사유
일반보호시설 (17)	일반 성폭력 피해자	1년 이내	1년 6개월(1회) *도과 후 특례 적용	심리적 안정 필요, 치료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보호시설 (8)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피해회복기간 까지 (1회당 2년)	피해 미회복으로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 필요 인정시
특별지원 보호시설 (4)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19세 미만 친족 성폭력 피해자	19세가 될 때까지	2년(1회)	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입학 확정자 포함)

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피해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의2.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되는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일반보호시설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시설 유형 (제12조)		입소 기간(제16조 및 시행규칙)		
종류(개소수)	입소대상	원칙(A)	연장(B)	연장 사유
외국인보호시설 (0)	외국인 피해자	1년 이내	1년 6개월(1회)	심리적 안정 필요, 치료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도과 후 추가연장 가능(2년, 1회)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일반3 장애3)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퇴소자 (장애인 포함)	2년 이내	2년(1회)	취업 및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 중일시

자료: 여성가족부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입소시점의 연령에 따라 입소기간이 다르게 적용됨. 예컨대 미성년 피해자가 입소한 기간이 2년 6개월(1년+1년 6개월)에 다다른 시점에 여전히 미성년인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성년(19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됨.

또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는 연장사유(학교 재학 중)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19세에, 연장사유에 해당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하더라도 21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하여야 함.

한편, 「아동복지법」³⁾은 지자체장이 18세가 된 보호대상아동이 보

3)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가 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현행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본문에 따른 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제외)의 입소기간(원칙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원가정 복귀나 원가정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의 18세가 된 보호대상 아동과 같이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2024년 6월 기준 보호시설은 35개소이며, 정원 377명 대비 현원은 241명으로 입소율은 63.9%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보호시설의 입소율이 63.9%에 머물고 있어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25세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까지 연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규로 입소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의견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현황(2024. 6. 기준)>

(단위: 명)

구분	정원	입소 현원	입소자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성인	친·인척 (4촌이내)	타인 등 기타
합계 (35개소)	377	241	79	162	146	98
일반보호시설 (17개소)	171	93	39	54	55	41
장애인보호시설 (8개소)	103	80	15	65	29	51
특별지원 보호시설 (4개소)	59	38	24	14	38	0
자립지원** (6개소)	44	30	1	29	24	6

* 가해자와의 관계는 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일반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3개소,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3개소

자료: 여성가족부

다만, 유사 입법례인 「아동복지법」의 체계와 달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특별지원 보호시설 제외) 입소자는 성인과 미성년이 있으며, 현행법 제16조는 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라 성인과 미성년을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인 입소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외국인보호시설은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입소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시설의 특성에 맞게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16조를 개정하는 것이 체계상 보다 바

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18세까지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미성년 피해자의 연장 의사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입소시설 유형을 불문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25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미성년 입소자의 자립 역량 강화가 기대되므로 수용하는 의견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및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미성년 입소자가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여 입소자가 안정감을 가지고 실질적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용하는 의견임.

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 ----- ----- ----- -----종사자(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제3호의2·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

	<u>다.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u> <u>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현행법 제19조4)는 상담소 등의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조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실무적으로 현행법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범죄경력 조치를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으로 수사기관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⁵⁾에서는 타 법률에 범죄 경력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 자격 기준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복지법」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9조의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에

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 2025. 4. 17. 시행 예정⁷⁾인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하여서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원활한 종사자 자격기준 확인을 위해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범죄 경력 조회 및 관계 기관의 회보 근거 규정이 필요하므로 수용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50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17.] [법률 제20461호, 2024.10.16., 일부개정]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